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7. 4.

#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7. 4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제정이유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5조 제목을 “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”에서 “(지역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변경
- 나. 지역계획의 명칭 정비(안 제5조제3항)
- 다.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
- 1) 기획예산담당관: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
- 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평가

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932호
  - 가) 예고기간: 2023. 5. 30. ~ 2023. 6. 19.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”을 “(지역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”을 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각각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지역계획의 경과조치) 종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는 <u>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</u>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<u>군 공보에</u> 공고하고, <u>군 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<u>군 공보에</u> 공고하고, <u>군 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군수는 제5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<u>군 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5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</u>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
##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⇒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함.

작성자: 도시교통과장 정 강 호

**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**

- 제6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광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
- ⑥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